

순천대학교 학생생활지도위원회규정

제정 1984. 3. 5. 개정 1988. 10. 24.
개정 1992. 3. 12. 개정 1995. 3. 29.
개정 2001. 9. 1. 개정 2007. 6. 26.
개정 2018. 9. 12. 개정 2019. 3.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65조에서 정한 순천대학교학생생활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3. 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지도계획 수립 및 선도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과외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출판 및 인쇄에 관한 사항(신설 1995. 3. 29)
4.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9.1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학생부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학생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 6. 26, 2019. 3. 20.)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된다.(개정 2007. 6. 26)

제4조(임기)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5. 3. 29)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8.9.12.>

④ 삭제 (1995. 3. 29)

제7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생지원과 학생담당 주무자가 된다.(개정 1995. 3. 29)

제8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단과대학 학생생활지도위원회) ①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 단위로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단과대학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단과대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되며 위원은 각 학과장과 행정실장으로 한다.(개정 1995. 3. 29)

③ 단과대학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의 조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10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8호, 2018.9.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